

[일련번호 : 1]

경 기 도 체 육 회

개 선 요 구

[제 목]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공도협회

[내 용]

경기도공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공도협회 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협회 「규정」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따르면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외의 위원회는 이사회 의결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 제6항에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가 별도로 정하도록 명시 되어 있다.

그런데 협회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심판분과위원회 외에 다른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경기·심판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규정도 제정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들의 직무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공도협회장은

규정 제37조에 따라 본회(경기도체육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규정을 제정하시기 바라며, 이사회 의사결정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여, 각 분야별(위원회별)로 기능과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경 기 도 체 육 회

권 고 요 구

[제 목]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 미가입

[소 속 기 관] 경기도공도협회

[내 용]

경기도공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공도협회 규정」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협회는 「규정」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라 연맹은 회계업무 수행의 주요기준과 절차를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계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회 「회계 규정」 제2조(적용)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회계관계 사무에 관하여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회 「회계 규정」 제11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르면, 회계 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맹은 회계관계 직원의 과실로 인한 변상 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회계 관련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무국 회계 운영을 위해 재정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일 현재 협회는 회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 ○○○, ○○○○, ○○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공도협회는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보험 가입에 대해 재정적인 문제는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공도협회장은

회계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어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예산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